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13

발의연월일: 2022. 8. 25.

발 의 자:정희용・구자근・권명호

김석기 · 김희곤 · 박덕흠

양금희 • 윤영석 • 윤창현

정우택 · 정찬민 · 최춘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 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그복구비 지원액(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있고, 막대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7호 중 "복구를"을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 경영회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는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4항 단 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	7
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	
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	
의 <u>복구를</u> 위한 지원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 경

8. • 9.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 략)

영회복을
8. • 9. (현행과 같음)
4
<u>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주</u>
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는 피해규
모에 따라 지원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
는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